

행정안전부 검토의견

승강기안전과 성기선 과장(044-205-4290, sgs2437@korea.kr)

승강기안전과 이정범 사무관(044-205-4292, jb1173@korea.kr)

<안전명 : 자가유지형 구동방식을 적용한 홈 리프트 >

☐ 해당 기술·서비스에 대한 신속확인 검토의견

소관 아님	소관 업무에 해당시		
	허가 등 불필요	허가 등 필요	법령 상 금지
		○ 동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업 등록과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과 승강기안전인증 등이 필요	

※ 허가 등이란 :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득해야 할 법령상의 각종 허가·
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·등록 등을 의미

☐ 기타의견(필요시)

○ 별첨자료 참조

참고1

각 질의사항별 검토의견

□ (질의 1) 본 건 제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

- 본 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(이하 “승강기법”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법을 적용받는 승강기로 봄이 타당함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승강기”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(「주차장법」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.

□ (질의 2) 본 건 제품이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

- 해당 승강기는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중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,

※ 승강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참조

- 첨부된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

□ (질의 3) 본 건 제품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하여 승강기법 및 기타 법령상 필요한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·등록 등

- 승강기법 제6조에 따라 승강기 및 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의무 이행

- 승강기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품 및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 이행

※ 타 법상 허가 등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로 문의

□ (질의 4)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대하여도 동법 제17조제3항,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

○ 승강기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(승강기 안전기준)”에 한정됨

※ 다만, 국민신문고나 공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법령 개정 건의는 상시 가능함

○ 참고로, 질의 2와 관련하여 해당 승강기는 현행 승강기안전부품 안전 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의하여는 안전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,

-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“새로운 안전 기준”의 제·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